

## 2024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

「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」 제2조제4항 관련

### ○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

(단위 : 원)

| 가구원 수 | 지역     |         | 직장      |         | 재산과표액      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| 보험료 순위 |         | 보험료 순위  |         |             |
|       | 25%    | 50%     | 25%     | 50%     |             |
| 1명    | 19,780 | -       | 71,270  | 91,060  | 122,000,000 |
| 2명    | 24,360 | 96,060  | 75,960  | 109,700 | 207,000,000 |
| 3명    | 33,550 | 107,410 | 87,440  | 134,480 | 268,000,000 |
| 4명    | 46,380 | 120,170 | 99,900  | 161,250 | 329,000,000 |
| 5명    | 50,200 | 129,560 | 122,810 | 191,430 | 389,000,000 |
| 6명이상  | 65,680 | 161,700 | 167,460 | 219,660 | 450,000,000 |

- 1)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,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
- 2)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
- 3)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(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)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
- 4) 재산과표액은 「지방세법」 제105조에 따른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,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
- 5)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 「보험료경감고시」 제9조에 따른 경감(100분의 50) 후 금액으로 함
- 6)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「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」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